

[정 정 대 비 표]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펀 드 명	BNK BNK주주가치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정 정 서 류	(간이)투자설명서
정 정 사 유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운용전문인력 변경
효 력 발 생 일	2026년 02월 24일

■ 정정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표지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생략)---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현행과 동일)---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6.01.23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6.01.23 기준으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 부책임용전문인력: <u>오준완</u>	- 2026.01.23 기준으로 업데이트 * 부책임용전문인력: <u>조진우</u>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표지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생략)---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현행과 동일)---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6.01.23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6.01.23 기준으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 부책임용전문인력: <u>오준완</u>	- 2026.01.23 기준으로 업데이트 * 부책임용전문인력: <u>조진우</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2026.02.24: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 영, 운용전문인력 변경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부책임용운전문인력: <u>오준완</u>	- 2026.01.23 기준으로 업데이트 * 부책임용운전문인력: <u>조진우</u>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가. ~ 다. (생략)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 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 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 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 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 식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으로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 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 (생략) --- 투자자에게 적합 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 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 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BNK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분류기 준 - 설정 후 3년 미경과 시] <표1>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 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 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 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상품 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 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32.2362%이며, 6 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 (현행과 동일) --- 투자자 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 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 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삭제>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가. (생략)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가. (현행과 동일)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및 문구 정 정	가. 이익배분 (1) 이익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 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	가. 이익배분 (1) 이익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 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

	<p>금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단서조항 신설> <p>4. <신설></p> <p>(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 분배금을 <u>한국예탁결제원</u>으로 인도합니다. ③ 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u>한국예탁결제원</u>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u>한국예탁결제원</u>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p>금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u>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u> <p>(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동일)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 분배금을 <u>전자등록기관</u>으로 인도합니다. ③ 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u>전자등록기관</u>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u>전자등록기관</u>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p>※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설></p> <p>(3) ~ (4) (생략)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p> <p>(2) ~ (3) (생략)</p>	<p>※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유보할 수 없는 이자수입 및 배당수익은 분배하여야 합니다.</p> <p>(3) ~ (4) (현행과 동일)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삭제> (이하 현행과 동일)</p> <p>(2) ~ (3) (현행과 동일)</p>
--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6.01.23 기준으로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6.01.23 기준으로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6.01.23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6.01.23 기준으 로 업데이트
------------------	---	---	--------------------------------------

<표1>

[BNK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분류기준 - 설정 후 3년 미경과 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해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끝>.